

[군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국민 서명운동]

국민주권정부의 기조에 맞게 군무원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군무원은 국군이 창설된 1948년 11월 ‘문관’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특정직 국가공무원이자 엄연한 민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군무원들은 단지 군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철저히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타 선진국 군무원들에게는 당연히 허용되는 노동조합 가입과 설립이 불가능하며,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군형법’을 적용받아 각종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장에서는 군인과 다름없는 전투 업무까지 지속적으로 강요받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 군무원이 처한 부당한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제5군수지원사령부 예하 군무원들이 강제로 유격 훈련을 받았습니다.

2020년 7월: 국방부 예하 전 부대에서 주중 야간과 주말·공휴일에 전투 병력인 군인을 지휘·통제해야 하는 경계 근무(당직사령, 당직사관, 당직부관, 위병조장 등)에 전체 군무원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11월: 해병대에서는 신임 군무원들을 상륙전 훈련, 산악 훈련, 해상 돌격 훈련, 천자봉 행군 등에 동원하여 소위 ‘해병대화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강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2021년 12월: 육군 제36보병사단은 신임 군무원 집체 교육 과정에서 민간인에게 금지된 사격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 3월: 특전사가 받는 전장 순환 훈련을 강요하였으며, 당직 근무 시 가스총 및 몽둥이를 휴대하게 하였고 이는 현재 일부 부대에서 여전히 시행 중입니다.

2022년 4월: 육군은 전체 군무원의 60%에 달하는 인력에게 ‘자위권 보장’을 명목으로 불법 총기 지급을 시도했습니다.

2022년 11월: 국방부 직할 소속 7,700여 명의 국직 군무원들 의견을 배제한 채 각 군 소속으로 강제 전환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2022년 12월: 국방부는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하여 군무원을 군기 적용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2023년 2월: 육군 흑한기 훈련에서 군무원들에게 군복 착용을 지시하였으며, 군무원을 군기교육대에 입소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2023년 7월: 육군 모 부대에서는 군무원에게 크레모아 폭발 훈련을 시켰습니다.

2023년 10월: 장애 군무원에게 체력검정을 강요하는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 3월: 체력검정 미참여 및 불합격 등을 이유로 다수의 군무원을 징계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군 4만 6천여 명의 군무원들은 국방부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상 소집되었으나, 이후 어떠한 사과와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2025년 1월: 군인이 사용하는 방탄 헬멧, 전투 조끼, 탄띠, 수통 등의 군장류를 근접 정비 군무원들에게 배포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까지 강제 지급 및 착용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육군 소속 군무원들이 본연의 임무와 무관한 혹한기 훈련에 강제 동원되어 완전 군장을 한 채 숙영과 행군을 강요받았으며, 이 지침은 현재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2024 성과상여금 업무지침’상 신분별 구분을 삭제하여, 임용 과정과 보수 체계가 전혀 다른 군인과 군무원을 통합 평정함으로써 다수의 군무원이 하위 평정을 받는 불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이 불합리한 평정 방식은 2026년에도 확대 시행되고 있으나 대다수 군무원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해군 항공사령부 소속 군무원들은 강제 체력단련을 위해 매일 일과 중 강제 구보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부대관리훈령’상 군기 순찰 대상에 군무원을 추가하였으며, 이 개정 사항 역시 대다수 군무원은 인지하지 못한 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수도군단 소속 군무원을 두발 불량 및 복종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감봉 2개월 징계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육군 미사일 전략사령부 모 부대 군무원 전원이 군인과 동일한 강도의 유격 훈련(강제 체력단련)을 강요받았습니다.

2025년 11월: 제17보병사단 소속 군무원을 두발 불량 사유로 감봉 2개월 징계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해군과 공군 일부 부대에서 군무원이 군기 적용 대상임을 공표하고 남성 군무원의 두발 규정 준수를 강제하였습니다.

2026년 3월: 육군 동해안군수지원단은 한미 연합훈련 행군 시 부대기를 군무원에게 들게 하였습니다.

2026년 4월: 육군 제1군수지원사령부는 한미 연합훈련 전투 부상자 처치 훈련 중 참여 군무원들에게 완전 군장을 시키고 엎드려좌 자세를 강요하였습니다.

2026년 4월: 2023년 군무원 처우 개선을 청원했던 전국 군무원 연대 재직 대표를 군형법상 정치 관여 및 군사기밀 누설 죄목으로 기소하는 탄압이 있었습니다.

2026년 4~5월: 두발 규정 위반으로 징계받은 17사단 및 수도군단 군무원들의 항고 결과, 각각 감봉 1개월과 견책 징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을 시민들의 힘으로 막아냈습니다. 그 위대한 항쟁의 결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 시대가 열렸습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고, 소외된 국민의 기본권을 되찾아주는 정부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부당하게 억압받고 착취되어 온 대한민국 국민, 4만 7천여 군무원들의 노동 기본권과 배제된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군무원은 군인이 아닙니다. 군무원은 노동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창원 다운홀 미팅과 한국노총 간담회 등에서 노동의 가치를 역설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에,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단결해 조직력을 높이고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야 지위가 올라가고 제대로 된 사회로 갈 수 있다.”

이 선언은 명확합니다. 노동자가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조직화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할 열쇠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4만 7천여 군무원들은 여전히 ‘기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군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노동권을 박탈하고 민간인에게 균형법을 전면 적용하는 관행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군무원의 노동 기본권 보장은 군사반란의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국방부의 실질적인 문민통제이자, 능력 중심의 인적 개혁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전국 군무원 연대는 국민주권 이재명 정부에 시대 역행적인 법률들의 즉각적인 개정을 요구합니다.

[군무원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요구안]

1. [공무원 노동조합법] 개정

제6조 가입 범위 제약 요건 삭제 (군무원 포함)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권고한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맞게 군무원에게도 노동기본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정책 협약 사항이자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시급한 개정을 요구합니다.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

제3조 적용 범위 중 '군무원 준용' 조항 삭제

전 세계 어떤 국가도 군인의 신분을 규정하는 법률에 민간인을 포함하여 과도하게 기본권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군무원에 대한 본 법률 적용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3. [균형법] 개정

제1조 적용 대상자 중 군무원 적용 조항 수정 (평시 삭제, 전시 한정)

평상시 민간인에게 균형법을 적용하는 국가는 민주 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국방부 본청 국가직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과도한 인권 통제이므로, 평시 적용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4. [정부조직법] 개정

국방부 등 정책 주요 부서에 군무원 보직 가능토록 개정

군무원은 해군 전체 병력보다 많은 4만 7천 명에 달하는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국방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부서 근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책 협약 사항이자 국정과제인 만큼 조속한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전국 군무원 연대 및 서명 참여자 일동